

재류 카드를 소지하신 계좌개설 신청 고객분께

개인 명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실 때에는 재류 기간 등의 확인을 위해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해 주십시오.
또한 방문하실 때에는 방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주십시오.

<준비할 것>

- ① 재류 카드 … 재류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. 또한, 계좌 개설 신청 시점에서 재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좌개설 신청을 할 수 없음으로 갱신 후 신청해 주십시오.



출처 :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

- ② (가지고 계신 경우) 학생증·사원증…재류 자격이 ‘유학’, ‘기능실습’인 분은 재적 사실 및 근무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재류 카드와 함께 학생증 또는 재적 증명서(사원증)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.

- ③ 인감(스탬프 등의 고무제 도장 제외)

<기타 유의사항>

- 계좌 개설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또한,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도 있음으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.
- 계좌 개설 후 재류 기간이 만료되면 거래 일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재류 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즈호 은행에 신고해 주십시오.
- 재류 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귀국이나 일본 밖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계좌 해지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.
- 계좌를 매매 및 양도할 경우, 향후 미즈호 은행 및 그 외의 은행에서도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.
계좌의 매매 및 양도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.